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19
----------	-----

2024. 3. 22.(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3월 14일

-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일 의원)

가. 제안사유

-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 상위법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추가(안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우리나라의 연간 학업중단 학생은 약 5만명, 2022년말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17만명으로 추정<sup>1)</sup>되며, 도내 학업 중단 청소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연간 약 4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업 지속(검정고시, 진학 준비, 복교 등), 취업·진로설계(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진로를 탐색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1)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교육부, 2022.11.28.)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므로 목적에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함.
  
-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청소년기본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현행 조례는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의 수립 주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상위법에 따른 시행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일원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문제아로 치부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떠나는 순간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누리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계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제2조 제2호”를 “한다)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중 “사회적”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6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제6조의2”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제6조의2”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상담·교육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제1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i> <li>2. (생략)</li> <li>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li> <li>4. <u>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u></li> </ol>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 한다) 제2조제2호----- -----.</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 「초·중등교육법」 제4조----- ----- -----.</li> <li>4. “<u>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u></li> </ol>

현행	개정안
<p><u>램</u>“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p>	<p><u>램</u>”이란 ----- ----- ----- -----.</p>
<p>5. (생략)</p> <p>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lt;삭제&gt;</p>
<p>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p>	<p>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2. ~ 4. (생략)</p> <p>&lt;신설&gt;</p>	<p>1. -----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p>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5.·6. (생략)</p> <p>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p> <p><u>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u></p> <p>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p> <p>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p>	<p><u>사회적 지원방안</u></p> <p>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u>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u></p> <p>7.·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8. ----- -- <u>위하여</u> -----</p> <p><u>&lt;삭 제&gt;</u></p> <p>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제6조의2----- ----- -----.</p> <p>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상담·교육지원</u></p>



현행	개정안
<p>정한다. <u>제11조(지역사회 연계·협력)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u></p> <p><u>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u>&lt;후단 삭제&gt;</u></p> <p><u>&lt;삭 제&gt;</u></p>

## 관계법령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제1호

### ○ 사 유

-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